

정 정 신 고 (보 고)

2026년 9월 9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
삼성KODEX IT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7.3.3

3. 정정 내용 :

- 설정단위 변경(100,000좌 → 50,000좌), 투자한도 및 운용제한 조항 조정, 법 사항 반영

4. 정정요구 · 명령관련 여부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8조(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)	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가 법령,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.	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판매회사· 지정참가회사, 일반사무관리회사,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(법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) 및 채권평가회사(법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) 가 법령,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제22조(설정단위)	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,000좌 로 한다.	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50,000좌 로 한다
제35조(투자한도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. (신 설)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(추 가)의 규정에 불구하고 ____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~4. (생 략)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(추 가)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	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. 5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.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, 제5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____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~4. (현행과 같음) 5.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, 제5호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36조(운용 제한)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____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. 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.~12. (생략) (신 설)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,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(추 가)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~5. (생략)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____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. 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.~12. (현행과 같음) 13.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 법인이 발행한 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)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,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,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~5. (현행과 같음)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항제2호, 제4호, 제5호,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부칙	(추 가)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(설정단위 변경(100,000좌 → 50,000좌), 투자한도 및 운용제한 조항 조정, 법 사항 반영)